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11. 1. 11 조례 제1136호
일부개정 2012. 7. 6 조례 제1231호
일부개정 2013. 12. 11 조례 제1335호
일부개정 2016. 5. 27 조례 제1574호
일부개정 2019. 5. 9 조례 제1921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0. 5. 15 조례 제2022호
일부개정 2025. 8. 6 조례 제2646호(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3. 12. 11〉

제2조 삭제 〈2019. 5. 9〉

제3조(설립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[전문개정 2019. 5. 9]

제4조(사업)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〈개정 2012. 7. 6, 2016. 5. 27, 2019. 5. 9〉

1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・관리
2.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・관리
3. 지역문화예술 창작・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
4.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
5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・관리, 보급과 조사연구
6. 시민축제 기획 및 운영
7.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8.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〈개정 2016. 5. 27〉

② 시는 재단의 설립・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

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〈개정 2016. 5. 27〉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6. 5. 27〉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공고에 관한 사항
9. 사업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16. 5. 27, 2019. 5. 9〉

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대표 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〈개정 2013. 12. 11, 2016. 5. 27〉

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 대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〈개정 2013. 12. 11, 2019. 5. 9〉

④ 대표 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〈개정 2013. 12. 11, 2016. 5. 27〉

⑤ 대표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〈개정 2013. 12. 11〉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〈개정 2013. 12. 11, 2016. 5. 27, 단서삭제 2019. 5. 9〉

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및 대표 이사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.〈개정 2013. 12. 11, 2016. 5. 27〉

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〈개정 2013. 12. 11〉
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,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〈개정 2013. 12. 11, 2016. 5. 27〉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〈개정 2016. 5. 27〉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〈개정 2013. 12. 11〉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〈개정 2016. 5. 27〉

제12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〈개정 2016. 5. 27〉

제12조의2(사용료 등)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또는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.〈개정 2013. 12. 11, 2016. 5. 27, 2020. 5. 15〉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「공연법」 제8조의 공공 공연장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람료를 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및「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용인시 문화의 날에 감면할 수 있다.〈신설 2020. 5. 15, 개정 2025. 8. 6〉

[본조신설 2012. 7. 6]

제13조 삭제 〈2019. 5. 9〉

제14조 삭제 〈2019. 5. 9〉

제15조 삭제 〈2019. 5. 9〉

제16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

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〈개정 2013. 12. 11, 2016. 5. 27〉

제17조 삭제〈2019. 5. 9〉

제18조 삭제〈2019. 5. 9〉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〈개정 2019. 5. 9〉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〈개정 2013. 12. 11〉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〈개정 2013. 12. 11〉

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)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·확정할 수 있다.

부칙〈2012. 7. 6 조례 제123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3. 12. 11 조례 제133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. 5. 27 조례 제1574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립예술단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「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립예술단에 소속된 상임단원은 용인문화재단의 근로자로 채용하고,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시립예술단 예산의 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라 시립예술단 예산이 재단의 예산으로 확정될 때까지 시립예술단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부칙 〈2019. 5. 9 조례 제192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0. 5. 15 조례 제202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5. 8. 6 조례 제2646호,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2항 중 “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경기도”를 “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및「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용인시”로 한다.